

7월 9일부터 외국인 주민등록제도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외국인도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에게도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이 발급됩니다.

~주민표 작성 대상자~

관광 등의 단기 체류자 등을 제외한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일본에 주소를 둔 아래의 분입니다.

중장기 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주로 ‘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 ‘유학’ 및 ‘영주자’ 등의 체류자격을 갖춘 분

일본에 체류자격을 갖추고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및 ‘단기체류’, ‘외교’, ‘공용’의 체류자격인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 영주자

일시 비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출생에 따른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따른 경과 체류자

전출, 전입 수속방법이 변경됩니다

다른 시구정촌으로 전출할 때는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시에는 이전 주거지에서 전출 신고로 교부받은 전출 증명서와 세대 전원분의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대신해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를, 특별 영주자에게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교환시기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정기간은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간주됩니다.

체류카드 교환 수속

체류자격	교환 수속	신청 장소
영주자	7월 9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 체류카드로 교환합니다.	입국관리국
영주자 이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갱신 시에 체류카드로 교환합니다.	입국관리국

체류카드 교부 대상이 아닌 분(체류자격이 없는 분·단기체류인 분·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인 분)은 입국관리국에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반납해 주십시오.

이사한 분, 체류기간 갱신 등을 하지 않은 분은 신속히 수속을

주민표는 외국인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5월경에 임시 주민표를 송부하므로 새 주소로 이사한 경우에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및 구청에서 수속을 밟는 것을 깜박하는 바람에 체류기간 갱신 및 체류자격 변경을 못한 분은 신속하게 소정의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새로운 제도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체류카드에 관한 사항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외국인 체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

TEL:0570-013904(IP전화·PHS·해외는 5796-7112)

주민표에 관한 사항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_korean.html